

기안용지

분류기호	농축 21465-1168	(전화: 1173. 2618)	시행상 특별회급
보존기간	양구·준양구. 10. 5. ③. 1.	A 장	
수신처 보존기간	3년		
시행일자	190. 10.		
보조 기관	행정과장 [인] 농축과장 [인] 가축위생 [인]	협조 기관 방무관양관	문서: 통계
기안책임자	이규환		
강유 수신 참조	각안강조	반신문의	A 장
제목	190년도로 제2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제1차			
수신:	내부절재		
제출:	같은거		
1. 농축 21465-150 (190. 1. 31) 190년도로 가축위생사업 계획과 관련됩니다.			
2.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행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과 같이 고시하고 각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시항목: 서로계재)			

1686

가. 기간 : '90. 10. 24 ~ 11. 14.

나. 우수 : 15,000 부.

다. 대상 : 국내에서 사용하는 계 (3개월령 이상)

라. 요청 : 구청별 자체계획 수립 실시.

1) 시술은 우수의 및 개업수의사 등원 실시.

2) 실시증명서 및 증거자료 확보.

아. 시술료 및 예방약 등 구입.

1) 시술료 : 두당 1,500 원 (축주 부담)

2) 시술재료 : 시술수의사 부담.

3) 예방약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70%는 본청에서 구입 예정

- 지방비 30%는 구청별 구입.

- 본청 예정분이 대비하는 인수증 제출

4) 실시증명서, 증거자료 : 구청별 구입.

바. 홍보

1) 축주에게는 등, 등, 반조경 및 배상회 등

홍보캠페인 강구.

2) 강조판은 에스캅을 통한 홍보.

3)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강릉학교를 통한 홍보.

4) 서울시 수의사회의사는 화순영 개항에 따라

홍원방역 장구.

5) 지하철공사는 설차내 방송을 통한 홍보.

사. 기 타.

1) 서울수위사

- 예방주사 실시대상 미치. 기록화면 > 민간 홍보.

2) 구청

- 기록화면 지도. 장동철지: 예방주사 실시대상

미치 및 기록화면상대 수사청경.

- 사업 종료후 기록화면에서 보고된 실적의 사실

여부 확인후 결과 보고.

- 예방주사 실시대상 사전 > 민간 홍보.

- 예방주사 실시기간중 방전 특별방송 실시.

첨부: 1. 고사(안) 1부.

2. '90년도 제2차 관공방 예방주사 실시계획 1부.

1633

(제2안)

(제 23))

수사 : 수사처 창조.

창조 : 산업과장

제목 : 같은 것

1. 농축 21465-150 (190. 1. 31) '90년도 가축양역사업

계획과 관철성.

2. 다음과 같이 '90년도 제2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요청하시 구별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에 안건을 기록기 하람.

가.

5 제1안 가~사항 이기서행함.

사.

첨부 1. '90년도 제2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계획 1부.

2. 고사본 1부.

수사처 : 서구 1-22.

(제 34)

수사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보고장.

창조 : 북부국장

제목 :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에 대한 지도 요청.

1. 우리시 90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 방역병

예방주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바깥에서 예방접종도록 지도하여 주시

2. 특히 방역병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주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방역이 가장 중요시되는 질병병으로 특별히 지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가. 실시기간 : '90. 10. 24 ~ 11. 14.

나. 실시대상 : 서울 시내에서 기르는 모든 개.

(3개월령 이상)

다. 실시장소 : 인근 가축방역원

라. 소요경비 : 서울회 1,500원 (출구부담)

예방약 등 기타비용 : 서울시 부담.

첨부 : 고시문 1부.

(제 4 단)

수신 : 서울특별시 수역사회 회장.

계통 : 같은 것 1690

90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 방역

같이 제2차 환경영예행추를 실시하오나 계획안행추에 따라
환경영예를 강우하여 본 사업 수행에 장애 성질이 있으므로 각기 환경영예
추진기 바랍니다.

가

5 제1차 가~사항 이기시행중.

사.

첨부 : 보고서 1부.

(제5차)

수신 : 지북철강사 사장.

제출 : 같은것

1. '90년도 우리시 각종환경사업 계획에 이기 제2차

환경영예행추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별칭 대응을 병행하오나 필차대 방문을 병행하여 추진기 추진
바랍니다.

첨부 : 보고서 1부.

(제6차)

수시 : 능권수사부경관.

장소 : 가축위생국장

제출 : 같은건 보고.

1. '90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 제2차

방역병 예방수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보고합니다.

가. 실시기간 : '90. 10. 24 ~ 11. 14.

나. 실시부수 : 15,000두.

(제1안)

수시 : 공보관

합시 : 산업경제국장

제출 : 같은건 고시 및 홍보요청.

1. '90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 제2차 방역병

예방수사 실시를 별첨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사보에 게재하여

수사의 등 내용을 이스건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문 1부.

2. 보도자료 1부.

(제2안)

1692

수신: 대우국장

발신: 산업경제국장

참조: 행정과장

제출: 비상회 공지사항 게재 의뢰.

1. 90년도 차출방안사업 계획에 의거 세무차 방지방
예방수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의 보다 철저적인 관어로 조파를
거양코자 하오니 별첨 내용을 10월 비상회 공지사항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비상회 공지사항 자료 1부.

'90년도 제2차 광경병 예방수사 계획

(단위: 두, 두원)

구분	계획두수	약종배정	실사내용
총로	500	350	○ 실시기간 : '90. 10. 24 ~ 11. 14 ○ 실시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개 (3개월령 이상) ○ 소요경비 : - 사슬료 : 1500원 (총수부분) - 약종비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는 본청에서 구입 예정. · 지방비는 각구별 자체구입. - 사슬재료비 : 사슬 수비사 부담. ○ 기타사항. - 사슬 수비사 : 예방수사 실시대상 개체 기록 보관 (3년간) 및 실시증명서, 수검료 발급. - 구청 : 가축방위 지도감독 철저 예방수사 실시기간중 행정특별면속 유포용산구청, 상봉구청은 자체 예방수사 실시 제1차 예방수사 잔여분 (총수 20두, 상봉 60두)은 제외하고 구입할 것.
중	300	210	
응산	600	420	
성등	1,100	770	
동대동	600	420	
중광	500	350	
성동	1,300	910	
도동	1,200	840	
노천	400	280	
은천	1,200	840	
사대동	900	630	
다포	1,000	700	
강서	500	350	
향천	800	560	
구로	500	350	
영동로	500	350	
동천	700	490	
파안	900	630	
강남	400	280	
서초	600	420	
강릉	200	140	
송파	300	210	
계	15,000	10,500	1694

고 시 (안)



90. 10. 6
25p
[Handwritten signatures]

서울특별시 고시 제337 호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0. 10.

서울특별시장

1. 목적 : 광견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함.
2.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상 : 우역시에서 거르는 모든 개(3개월령 이상)
4. 장소 : 인근 가축병원
5. 기간 : '90. 10. 24 - 11. 14
6. 기타 : 위 기간중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아니한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개 주인은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됩니다.

반상회 공지사항
=====

제목 :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안내

- 0. 실시기간 : '90. 10. 24 - 11. 14
- 0. 실시장소 : 인근 개축병원
- 0. 시술료 : 1,500원(축주부담)
- 0. 예방약 : 서울시에서 부담.

공
보
문
= = = = =

서울시에서는 10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시내 각국영원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겨울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되며 광종,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무서운 질병으로 광견병을 걸린 개에 접촉하면 감염을 통하여 전염됩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는 빠짐없이 예방접종하여 광견병을 예방합니다.

(방송 요청시간 : '90.10.20 - 11. 5)

서울특별시



제공일자	1990년 10월 일
제공부서	농축과가축위생계
연락전화	(일반) 773 2678 (행정) 386

제목: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서울시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보건에 기여코자 오는 10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시내 전역에 걸쳐 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합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이 기간중에 시내 전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며 예방약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주사시술료 1,500원은 개를 기르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두거나 잡아 없애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되고 개 주인은 고발되며 개를 함부로 풀어 놓았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오니 이웃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기르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규 칙 령

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 1.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을 받을것을 명 할수 있으며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권역수의사를 두게 할수 있다.
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 명령)
 1.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명령을 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 종계 및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 주사, 약육, 투약 또는 정기검사의 실시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기탁 필요한 사항
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살처분 명령) 3. 시 도지사는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축견이 옥외에서 배회하는것을 발견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억류하거나 살처분 기탁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광견병이란

모든 온혈동물의 급성전염병으로서 광증, 정신장애를 나타내어 결국에는 마비되어 거의 예의없이 죽게되는 질병으로 개에 물렸을때 참? 통하여 전염되는 것이 특징임.